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56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 론	2
2. 개별법률 검토	4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4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30.

다.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 ·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총 론

□ 개정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¹⁾

□ 현행법상 피한정후견인은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회사는 다단계판매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을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는 문제가 있음.

1)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장애인·노인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민법」의 개정을 통해 2013년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던 것과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따라 행위능력을 개별적·한정적으로 제한하는 차이가 있음.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 비교>

성년후견제 도입 전	성년후견제 도입 후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 이에 개정안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개별법률 검토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제14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4조(결격사유)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1. ----- ----- -----
가. <u>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u>	가. <u>미성년자</u> ----- -----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통해 이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²⁾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 형태를 의미함.

□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피한정후견인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모집으로 인한 하방 확장성이 강하고, 특정 판매원의 후원수당이 하위 판매원 등의 거래실적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사행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타 직역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의 이러한 특성상 대규모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³⁾ 강화, 청약철회 시 대금환급 의무 부여, 개별 재화 가격 상한 등의 규제를 설정하고 있음.

□ 또한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원칙적으로 삭제하기 위해서는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3)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피한정후견인의 다단계판매업 직무 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⁴⁾하기 위한 실질적 기준과 업무수행의 과실 등 직무 부적합자에 대한 사후 통제 기준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요건·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업자의 자격요건이나 직무 수행능력의 검증과 관련하여 자격시험, 교육 등의 사전 검증수단이나, 등록취소와 같은 사후 검증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20일 시행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각각 기준, 요건, 자격 등의 직무 부적합자 업무 수행 검증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음.

4)

□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 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삭제하고, 개별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법제처·법무부 보도자료, “법제처·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중, 2019. 7. 9.)

<직무 부적합자 검증 및 통제수단>

구분	법률	검증 및 통제수단
가맹거래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사전: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 후 10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 • 사후: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록 취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 사전: 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 사후: 감사·증명에 위반을 한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에는 등록취소·직무정지 등 징계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사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사후: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임이 가능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사전: 금융기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 사후: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위원회가 정하도록한 규정을 통해 통제 가능
협동조합 임원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 사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가능 • 사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한 사행적 행위 및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합리적 판단능력이 필요하며, 결격사유에서 해당 조문 삭제 시 피한정후견인의 명의대여를 통한 불법적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지닌 자에 한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0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0조(결격사유)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u>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u>	<u>나. 피성년후견인</u>
다. ~ 바. (생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결혼 및 적립식 여행 등을 위하여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 및 재화 등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함.

□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이 회사의 임원인 경우를 삭제하여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 및 용역등을 미리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할부계약과 달리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계약으로서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므로 사업자의 재화·용역 제공 약속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등록요건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가입자가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선수금 규모는 2024년 3월말 기준 9조 4,486억원, 총 가입자 수가 892만명에 이르고 있어 업체 폐업시 대규모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등록업체 수	84개	75개	73개	79개	78개
가입자 수	636만명	684만명	729만명	833만명	892만명
선수금	58,838억원	66,649억원	74,761억원	83,890억원	94,486억원

* '23년도부터는 신규 등록한 선불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포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실질적 기준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능력의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요건 등의 사전·사후 검증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미래의 용역 제공과 납입금의 안정적 관리·운용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5